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구매기업용)

현 행	개 정	비고
제1조 ~ 제2조 <기재 생략> **제3조 (발주서에 대한 대금의 지급)** ①~④ <기재 생략> ⑤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구매기업의 사정으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1조 ~ 제2조 <현행과 동일>** **제3조 (발주서에 대한 대금의 지급)** ①~④ <현행과 동일> ⑤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구매기업의 요청에 의해 기업종합통장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과 약정 체결한 기업종합통장대출, 당좌대출의 이자 결산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 약관변경 권고반영
제4조 ~ 제9조 <기재 생략> **제10조 (발주서의 전송, 취소 및 변경)** ① <기재 생략> ② 발주서의 전송, 취소 및 변경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 ~ 6. <기재 생략> 7.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협력기업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소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신설> 8. ~ 10. <기재 생략> ③ <기재 생략> **제11조 ~ 제18조 <기재 생략>** <신설>	**제4조 ~ 제9조 <현행과 동일>** **제10조 (발주서의 전송, 취소 및 변경)** ① <현행과 동일> ② 발주서의 전송, 취소 및 변경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 ~ 6. <현행과 동일> 7.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협력기업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소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8. ~ 10.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제11조 ~ 제18조 <현행과 동일>**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약관변경 권고 반영